



구)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 
(유형문화재 제7호)

구)일본58은행인천지점  
(유형문화재 제19호)

구)인천일본18은행지점  
(유형문화재 제50호)

청·일조계지계단  
(기념물 제51호)

## 현상변경허용기준

### 별례

-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
- 2010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50m 간격)

현상변경 이용기준	
구 분	평지부 경사지부(3:10 이상)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지형보존</li> <li>- 문화재 보존,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이용</li> <li>- 기존 건축물을 개조·이용</li> </ul>
2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고높이 6m 이하 (단, 담장 및 척却是 보존)</li> <li>최고높이 7.8m 이하 (단, 담장 및 척却是 보존)</li> </ul>
3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고높이 6m 이하</li> <li>최고높이 10m 이하</li> </ul>
4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고높이 11m 이하</li> <li>최고높이 13m 이하</li> </ul>
그외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역문화환경 보전 및 역사에 대한 험화, 균형화 등 관리방법에 따라 처리</li> <li>고서화된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관리방법도시 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계획 등 포함되어 관리·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이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.</li> </ul>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반영내용 구역에 강원주택의 신축을 제한함</li> <li>기존 주택 및 시설물이 이용기준에 어울릴 경우 기존 평면 내에서 기존을 그대로 유지</li> <li>건축면적이 이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첩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.</li> <li>문화재와 조성되는 상상을 공정</li> <li>위생 및 저장 및 처리시설, 분수 및 쓰레기처리시설, 도로장, 고을상, 흐리풀처리시설 등 일부 유사한 시설은 개별설정</li> <li>높이 3m 이상의 물 설치를 주민거주, 높이 3m 이상의 벽면, 액체, 음악과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설정(사마총의 활용되는 경우, 지도면적 50% 이상의 물 설치)</li> <li>건물들이 흐리풀, 흙, 계단, 흙, 흙기둥, 벽면, 장석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물을 포함한 물체의 최고높이 산정시 대체로 두개의 도로가 겹친 경우 낮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.</li> <li>도로, 고개 등 일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설정</li> <li>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서 민법의 길이 26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을은 개별설정</li> <li>개기기, 근대건축물, 힘之城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확장의 한정 및 면세시 문화재위원회와 협의로 해결</li> </ul>

■ SCALE : 1/3,000(A3)

